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2019. 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국내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및 화장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과 타법 및 외국 규정을 참고하여 제시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됨.

특히, 거리·넓이·설치 수량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권고사항으로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목 차

제 1 장 사업장 세척시설·화장실 설치 필요성 02

Ⅰ. 세척시설·화장실의 정의 03
Ⅱ. 세척시설·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03
Ⅲ. 세척시설·화장실은 왜 필요한가? 04
Ⅳ. 시설 자금 보조·융자, 조세 공제 제도 안내 05

제 2 장 세척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10

Ⅰ. 적용 대상 사업장 11
Ⅱ. 설치 및 이용 원칙 15
Ⅲ. 설치·운영 가이드 주요내용 16
Ⅳ. 설치·운영 가이드 18
Ⅴ. 주요 체크리스트 31

제 3 장 세척시설과 화장실 관련 규정 33

Ⅰ. 세척시설 관련 법령 34
Ⅱ. 화장실 관련 법령 48

제 4 장 외국 및 타법의 세척시설·화장실 관련 규정 56

제1장

사업장 세척시설 · 화장실 설치 필요성

Ⅰ. 세척시설·화장실의 정의
Ⅱ. 세척시설·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Ⅲ. 세척시설·화장실은 왜 필요한가?
Ⅳ. 시설 자금 보조·융자, 조세 공제 제도 안내
Ⅳ-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Ⅳ-2.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안내
Ⅳ-3.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안내

I 세척시설 · 화장실의 정의

- 이 가이드에 나오는 세척시설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및 세탁시설을 말합니다.

  - 세면·목욕시설 : 근무시간이나 종료 후 세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 탈의시설 : 근무복이나 평상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
  - 세탁시설 : 근무복 등을 물·비누 등 용제를 이용하여 빨래할 수 있는 시설

- 화장실은 대·소변을 해소할 수 있는 변기와 손 등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공간을 말합니다.

II 세척시설 · 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한 화장실 부족으로 노동자의 건강저해가 초래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 사례

- '17. 6. 27. ○○시 청소노동자 근무지 24곳 중 2곳만 샤워장 갖춰,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샤워해라"
- '18. 1. 26. ○○공항의 100여명에 달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용변기 1개에 불과하고, 청소중인 비행기로 올라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음.
- '18. 10. 2. '좌변기 한 개에 노동자 58명… "고객 화장실은 쓰지 마" 백화점과 면세점 대부분 노동자들이 고객용 시설을 쓰는 것을 금지하며, 직원 화장실은 숫자도 적고 거리도 너무 멀어 방광염 등 질환에 시달림
- '19. 6. 23. 건설현장 중 여성전용 화장실, 탈의·샤워시설 갖춘 곳이 열 개 중 한개현장에 불과해… 화장실 이용 중 남성이 문을 열어 수치심을 느끼고, 외진 곳에서 옷을 갈아 입거나 땀에 젖고 오염된 작업복 입은 채 귀가해…

Ⅲ 세척시설 · 화장실은 왜 필요한가?

세척시설과 화장실 설치 시 좋은 점

○ 오염원으로부터 건강 보호
○ 위생 확보를 통해 질병 예방
○ 노동자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
○ 업무 능률 향상

○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신체적 측면)** 위생상태 개선을 통해 오염원으로부터 노동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보호,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측면)** 쾌적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기본위생 관련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무능률 향상

- 노동자의 위생관련 기본적 욕구 해소가 원활해지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능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V 시설 자금 보조 · 융자, 조세 공제 제도 안내

IV-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떨어짐 등 재해예방 설비투자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아래 사업자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1)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2) 고용부·공단·민간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대상 설비

○ 작업환경 개선(세안·세척시설·분진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 **세안·세척시설:**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목욕시설·체력증진·교육시설 등)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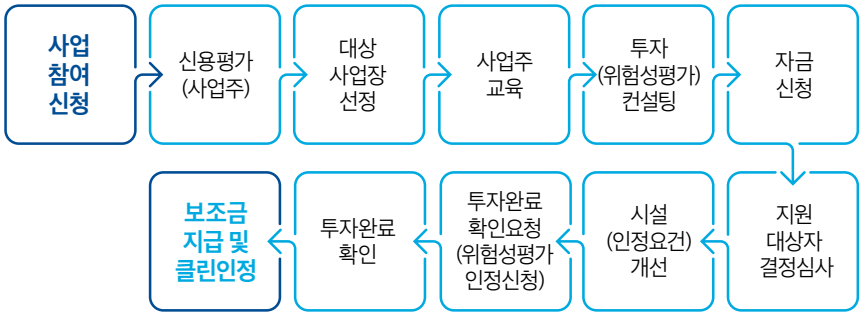

Ⅳ-2.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안내

■ 사업목적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조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대상 설비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세안·세척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재해 예방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안전장치가 완비된 유해·위험 기계·기구(지게차, 포장기계 등)
- 안전인증(S 또는 KC)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 지원절차

융자 신청 → 투자 계획 확인 → 지원 대상자 결정심사 → 시설 투자 → 투자 완료 확인 → 투자확인서 발급 (대출) → 사후 관리

■ 사업안내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참조

Ⅳ-3.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안내

구 분	제 목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 아. 생략 6. 생략

<table>
<tr><th>구 분</th><th>제 목</th><th>내 용</th></tr>
<tr><td>조세특례제한법</td><td>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td><td>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table>
<tr><th rowspan="2">시설</th><th colspan="3">공제율</th></tr>
<tr><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h>그 밖의 기업</th></tr>
<tr><td>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시설</td><td>10분의 7</td><td>100분의 3</td><td>100분의 1</td></tr>
<tr><td>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td><td>100분의 10</td><td>100분의 5</td><td>100분의 3</td></tr>
<tr><td>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td><td>100분의 10</td><td>100분의 10</td><td>100분의 10</td></tr>
<tr><td>제1항제5호 시설</td><td>100분의 10</td><td>100분의 5</td><td>100분의 1</td></tr>
</table>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td></tr>
<tr><td>같은 법 시행령</td><td>제22조의4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td><td>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td></tr>
</table>

참고

세척시설 설치 시 조세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 회시

○ 질의

- 2016년 중에 신축하여 취득한 사무동 건물 중 일부분을 직원복지를 위한 노동자 휴게시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로 만들었음.

- 사무동 건물 안의 노동자 휴게시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노동자 복지증진 시설에 해당하는지와

- 사무동 건물 전체를 신축하면서 노동자 휴식공간 등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취득금액만을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질의함.

○ 회신

-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시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제 2 장

세척시설 · 화장실 설치 · 운영 가이드

Ⅰ. 적용 대상 사업장

Ⅱ. 설치 및 이용 원칙

Ⅲ. 설치·운영 가이드 주요내용

Ⅳ. 설치·운영 가이드

Ⅳ-1. 일반사업장

1. 공통사항 2. 세면시설·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세탁시설 5. 화장실

Ⅳ-2.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

1. 공통사항 2. 세면시설·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세탁시설 5. 화장실

Ⅴ. 주요 체크리스트

I 적용 대상 사업장

1. 세척시설

1) 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작업명	설치 및 비치품목
환경미화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작업,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 미생물로인해 신체·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	설치) 세면·목욕, 탈의 및 세탁시설 비치) 필요 용품·용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설치)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시설 비치) 필요 용품·용구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자극성 또는 부식성관리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설치) 긴급세안·세척시설 비치) 필요 용품·용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1] 및 작업장	설치) 탈의·목욕, 갱의실, 긴급세안·세척시설 비치) 필요 용품·용구
석면 해체·제거작업[2]	설치) 탈의·샤워·갱의실 비치) 필요 용품·용구
금지유해물질 취급 실험실 등	설치) 긴급세안·세척시설 비치) 필요 용품·용구
온도·습도에 의해 근로자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1]	설치) 탈의·목욕·세탁시설 및 작업복 건조 시설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설치)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시설 비치) 필요 용품·용구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작업	설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작업명	설치 및 비치품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정한 분진작업 1. 암석 등(습기 있는 상태 제외, 이하 같음)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단,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 시추 작업,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작업 제외) 2.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3.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분쇄, 체로 거르거나(수중작업 제외), 쌓거나 내리는 작업 4. 갱내의 1~3호까지의 장소와 근접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보수하는 작업 5. 암석 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작업(화염 이용 작업 제외) 6. 연마재 분사 연마, 연마재·동력사용 암석·광물·금속 연마·주물·재단 작업(화염 이용 작업 제외)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체로 거르는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탄소제품 건조, 쌓거나 내리거나, 혼합·살포·포장 작업 9. 분말 알루미늄·산화티타늄 혼합·살포·포장 작업 10. 분말 광석·탄소원료를 원료·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 공정에서 분말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살포 작업 11. 유리·법랑 제조 공정에서 원료혼합, 원료·혼합물 용해로 투입 작업(수중 원료 혼합작업 제외)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연마재 제조 공정에서 원료 혼합·성형, 원료·반제품 건조,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가마 내부 작업.(단, 도자기 제조 공정에서 원료 투입·성형하여 반제품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수중에서 원료 혼합 작업 제외) 13. 탄소제품 제조 공정에서 탄소원료 혼합·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꺼내거나 제작하는 작업 14. 주형 사용 주물 제조 공정에서 주형(鑄型) 해체·탈사(脫砂)·주물모래 재생·혼련(混鍊)·주조품 등 절삭 작업	설치)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

작업명	설치 및 비치품목
15. 암석등 운반하는 암석전용선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모으는 작업 16. 금속·그 외 무기물 제련·녹이는 공정 토석·광물 개방로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주입 작업(전기로탕출, 금형주입작업 제외) 17. 분말 광물 연소 공정이나 금속·그 밖의 무기물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연돌 등에 붙거나 쌓여있는 광물찌꺼기·재를 긁어내거나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작업 18. 내화물 이용 가마·노 등을 축조·수리하거나 내화물 이용 가마·노 등을 해체·파쇄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차량 등 내부에서 금속 용접·용단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작업 21. 동력 이용 목재 절단·연마·분쇄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안료 분쇄, 분말 염료·안료 계량·투입·포장하는 작업 24. 곡물 분쇄하거나 분말 곡물 계량·투입·포장 작업 25. 유리섬유·암면(巖綿) 재단·분쇄·연마 작업	설치)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

1) 세면시설없이 목욕시설 설치의무만 있는 업무는 전신세척(목욕)을 해야하므로 세면시설을 설치하여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세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가' 항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준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 용품·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 **건설공사 현장**

- '가'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설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 '가'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탈의실 (작업복 갱의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법령 상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아래 예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작업명(예시)	설치 및 비치품목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가공, 조리, 저장,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운반, 진열하는 작업	설치)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비치) 필요한 용품과 용구
사업주가 지정 또는 제공한 복장을 착용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운송 및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	설치) 탈의 및 세탁시설 비치) 필요한 용품과 용구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상품을 인수,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작업	설치)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비치) 필요한 용품과 용구
법에 정한 강한 오염의 위험성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냄새를 동반하는 물질을 다루는 활동,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활동, 냉난방 상황(더위, 추위)에서의 활동, 고된 육체 노동 활동을 하는 경우 등	설치)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비치) 필요한 용품과 용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설치)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 탈의시설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현장에 전면적용 비치) 필요한 용품과 용구

2. 화장실

○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장

○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이므로 가급적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II 설치 및 이용 원칙

○ 사업주는 세척시설 및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 하게 관리할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주가 세척시설·화장실을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세척시설·화장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업장 보건관리'에 세척시설·화장실의 설치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상급자와 같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 특히,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원 등 용역·파견 노동자, 수급인의 노동자, 입점업체 판매노동자 등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노동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 용품·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 화장실 사용은 기본적인 생리현상과 관계되는 문제로 노동자의 건강권 및 인권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직영노동자는 물론 용역·파견노동자, 수급인의 노동자, 입점업체 소속노동자 등에게 항상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특히, 면세점·백화점 등 판매시설에서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고객전용화장실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하여서는 안됩니다.**

III

설치 · 운영 가이드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일반 사업장	공통사항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설치 • 안전시설(소화기,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 사용, 바닥 하수구에 악취 차단장치 설치 • 설치물·시설물로 인한 노동자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것 • 공중화장실을 고객전용화장실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도록 할 것
	세척시설	세면·목욕시설	• 다수 세면대 · 샤워기를 동시 사용시 움직임 공간 · 통로 겹침 방지 • 작업장과 목욕시설 사이의 이동거리는 가급적 300m 이내 유지 • 비누·샴푸 등을 구비하고, 비누선반·수건걸이 등을 비치 • 실내조명은 150~300 Lux로 하고, 습기 배출을 위한 자연환기(창문 등) 또는 환기장치 설치 •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사용빈도에 따라 청소
		탈의시설	• 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설치 • 출입문 앞에 신발을 털거나 닦는 시설 설치 (예: 철망, 발 매트 등) • 악취가 심한 물질 · 강력한 오염에 노출된 작업복·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 분리 • 목욕시설과 같은 공간 내 설치, 이동거리는 가급적 300m 이내 유지
		세탁시설	• 작업복 세탁이 필요한 작업시 세탁시설과 세탁물 건조 공간 확보 • 인원수에 맞게 빨래건조대 구비, 주기적 청소 및 청결 관리 •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작업복·보호복을 숙소 등 개인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 내 세탁 또는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
	화장실		• 작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적절히 분산 설치 •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 설치 (이동·간이 화장실 등 제외) • 변기와 세면대 앞에는 움직일 수 있는 여유공간과 통로공간 확보 • 변기칸 안에 옷걸이용 고리, 화장지 걸이, 화장지 등 비치 • 실내조명은 60 ~ 150 Lux, 환기 및 난방시설 설치, 필요시 온수 공급 • 변기는 매일 사용시 1일 1회 이상 청소, 그 외 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 및 소독 • 정기적 청결 상태 유지, 청소 점검표 마련, 청소담당 인력의 지속적 관리 상태 표시

구 분			주요내용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공통사항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제작·설치 • 안전시설(소화기,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 화장실과 목욕시설 외부에 개인보호장비(예: 안전모등) 보관 장소 확보 •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 사용, 바닥 하수구에 악취 차단장치 설치 • 설치물이나 시설물로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
	세척시설	세면·목욕시설	• 다수 세면대 · 샤워기를 동시에 사용시 움직임 공간 · 통로 겹침 방지 • 실내조명은 150~300 Lux로 하고, 습기 배출을 위한 자연환기 (창문 등) 또는 환기장치 설치 • 휴게실, 작업준비실 인근에 별도 설치(야외시설은 이동시 외부시설, 날씨변화로부터 보호) • 비누, 샴푸 등을 구비하고, 비누선반, 수건걸이 등을 비치 •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사용빈도에 따라 청소 실시
		탈의시설	• 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설치 • 출입문 앞에 신발을 털거나 닦는 시설 설치 (예: 철망, 발 매트 등) • 악취가 심한 물질·강력한 오염에 노출된 작업복·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 분리
		세탁시설	• 세탁과 세탁물 건조공간 확보, 인원수에 맞게 빨래건조대 구비, 주기적 청소 및 청결 관리 •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 상태 주기적 점검 •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작업복 · 보호복을 숙소 등 개인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내 세탁 또는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
	화장실		• 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적절히 분산 설치 • 이동거리는 300m 이내 유지 • 작업장 위치의 계속 변경 또는 지하에 위치하거나, 노동자 10명 미만 현장은 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 간선 또는 지선 버스는 회차 지점에서 100m 이내에 확보, 야간에도 이용 조치 - 장거리 노선(3시간 이상)은 회차지점 외에 중간 운행경로 상에도 확보 - 중·단거리 노선(3시간 미만)에도 확보 필요 • 세면대가 내부에 없다면 가까운 곳에 비치, 휴지 등 위생용품 제공 • 실내조명은 60 ~ 150 Lux, 가급적 환기장치 설치, 자연(창문)환기시 양방향 환기 • 변기는 매일 사용시 1일 1회 이상 청소, 그 외 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 및 소독 • 정기적 청결 상태 유지, 청소 점검표 마련, 담당 인력의 관리 상태 표시

Ⅳ 설치 · 운영 가이드

Ⅳ-1. 일반사업장

1. 공통 사항

- 남·녀의 성별로 세면시설·목욕시설·탈의시설·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합니다.

-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합니다.

- 화장실 내에서 탈의 및 샤워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구분된 공간에 탈의실과 샤워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바닥 하수구에는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예시) 배수관 악취의 역류를 막기 위한 트랩의 봉수부에 담긴 물은 새로운 물로 교체 가능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수 밸브(수도꼭지) 별도 설치 등**

- 가능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하도록 관리하고, 각 시설에는 안전시설(소화장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비치합니다.

- 설치물이나 시설물로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하며, 필요용품 이외 다른 물건(특히 위험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 급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세면시설 · 목욕시설

1) 설치기준

○ 세면대·샤워기 설치대수는 동시 사용인원과 유해물질의 종류, 노출량,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적정한 수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제4장 독일의 목욕시설 관련 자료 참고 (68 ~ 70쪽)

○ 세면대와 샤워기 앞에는 가급적 60cm x 80cm 이상의 세면 또는 샤워를 위한 움직임 공간이 있어야 하며, 움직임 공간과 별도로 통로공간을 확보합니다.

○ 목욕시설 내 샤워기 1대당 최소 면적은 1㎡ 정도를 확보하고, 한 쪽 면의 길이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동시에 여러 명이 세면대와 샤워기를 사용하더라도 세면을 위한 움직임 공간 또는 샤워를 위한 움직임 공간과 다른 노동자의 이동 통로공간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합니다 (62쪽 그림1 참조)

○ 작업장에 세면대와 샤워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동일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동시 사용률을 낮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과 목욕시설 사이의 이동거리는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설치비품

○ 피부나 손을 씻는 비품(비누, 샴푸, 린스 등)을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합니다.

○ 비누선반, 수건걸이 등을 비치합니다.

- 세척시설에는 머리 말리는 장치(예, 드라이기, 선풍기)를, 세면대에는 손 건조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 샤워기는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를 설치합니다.

3) 조명, 환기 및 배수

- 실내조명은 KS 조도기준(KSA 3011)을 준용하여 150Lux ~ 300Lux로 합니다.

- 습기를 효율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연 환기(창문 환기) 또는 환기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 하수는 가장 짧은 경로로 가장 빨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세면대나 샤워기를 거쳐 흘러서는 안 됩니다.

4) 관리

- 세면·목욕시설의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 세면·목욕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되는 곳이라면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 세면대와 샤워기에는 냉·온수를 공급하고, 사용시간 동안 물의 온도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탈의시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목욕시설의 경우 건조한 구역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3. 탈의시설

1) 설치기준

-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어야 하며, 안쪽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규정된 근무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탈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작업 중 악취가 심한 물질이나 강력한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 작업복·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 탈의시설 출입문 앞에는 필요한 경우(예: 오염이 심한 작업) 신발을 닦기 위한 적절한 장치(예: 철망, 발 매트, 신발 청소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탈의시설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1인당 여유 면적이 0.5m^2는 확보되도록 하며, 이동 통로도 고려해야 합니다.

- 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만일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층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통로의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이동 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장과 탈의시설 사이의 거리는 가급적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 고열작업의 경우 작업 후 이동하는 동안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라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용하는 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치비품

- 쓰레기통, 거울을 비치하고, 작업 중 젖게 되는 작업복 및 보호복을 건조할 수 있는 전기 건조기 등의 비치를 권장합니다.

- 옷 보관 등을 위한 사물함 규격은 가급적 최소 30cm x 50cm x 180cm으로 하고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복과 작업복 등을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으면 사물함 2개를 제공하거나, 칸막이가 있고 폭이 2배인 사물함을 설치합니다.

3) 관리

- 창문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소독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 세탁시설

- 작업복을 세탁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경우 세탁과 세탁물 건조 공간을 확보하고, 빨래건조대를 사용인원수에 맞게 구비하도록 권장합니다.

- 물빠짐이 잘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하도록 하며, 세제 등이 부족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급적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 창문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보호복의 경우 집이나 개인 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세탁하거나,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 세탁합니다.
  - 단,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를 알리고,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전달합니다.

5. 화장실

1) 설치기준

-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화장실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내 변기 및 세면대 개수는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수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제4장 독일의 화장실 내 변기 및 세면대 개수(60쪽) 참고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수세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하거나,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남녀근로자수가 같을 경우에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은 제외합니다.

- 변기와 세면대 앞에는 변기 사용 및 세면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이동하는 노동자의 통로공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 작업장, 휴게실, 목욕시설, 탈의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이동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2) 설치비품

- 화장실에는 손 씻는 세면대와 비누, 건조설비(예: 온풍 건조기)가 있어야 합니다.

- 변기칸 안에는 옷걸이용 고리, 화장지 걸이, 화장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온수가 공급되고,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3) 관리

- 실내조명은 KS 조도기준(KSA 3011)을 준용하여 60~150Lux로 합니다.
- 가급적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연 환기(창문 환기)의 경우 양방향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기는 매일 사용되는 경우 하루 1번은 청소해야 하고, 화장실과 그 부대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합니다.
- 정기적이고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해 화장실에 청소 점검표를 마련하여 청소 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상태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IV-2.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

1. 공통 사항

- 남·녀의 성별로 세면시설·목욕시설·탈의시설·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가림벽이나 문 및 창문 등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합니다.

- 화장실 내에서 탈의 및 샤워를 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구분된 공간에 탈의실과 샤워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과 목욕시설의 바깥에는 개인보호장비(예: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바닥 하수구에는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예시) 배수관 악취의 역류를 막기 위한 트랩의 봉수부에 담긴 물은 새로운 물로 교체 가능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수 밸브(수도꼭지) 별도 설치 등

- 가능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하도록 관리 하도록 합니다.

- 필요용품 이외 다른 물건(특히 위험 물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설치물이나 시설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 급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각 시설에는 안전시설(소화장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비치합니다.

-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에서 크레인설치나 화재·폭발 위험 등으로 이 가이드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세척시설·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영향을 벗어난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 건설현장용 이동차량, 컨테이너, 기타 간이공간의 내부에 세척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3자가 인근에 충분한 세척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고 적절히 관리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장 IV-1 설치기준에 따름

2. 세면시설 · 목욕시설

-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하더라도 세면대 사용 또는 샤워를 위한 움직임 공간과 다른 노동자의 이동 통로공간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실내조명은 KS 조도기준(KSA 3011)을 준용하여 150Lux ~ 300Lux로 합니다.

- 샤워기 1대당 80cm x 80cm의 면적이 필요하고, 샤워기 및 세면대 앞은 샤워 또는 세면을 하기 위한 0.5m^2의 움직임 공간이 필요합니다.

- 습기를 효율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연 환기(창문 환기) 또는 환기 장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 매일 노동자들이 세면·목욕시설이 있는 회사 건물이나 숙소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옥외작업장에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장 실정 상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 또는 작업장에 세면대와 샤워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 사업주는 노·사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동일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에서 샤워 및 탈의하지 않도록 가급적 세면·목욕시설 및 탈의실을 휴게실이나 작업준비실과 가까운 곳에 별도 확보합니다.

○ 목욕시설이 야외에 있을 경우, 탈의시설로 가는 통로는 노동자를 외부 시선과 날씨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누, 샴푸 등을 구비하고 비누선반, 수건걸이 등을 비치합니다.

○ 세척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되는 곳이라면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3. 탈의시설

○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어야 하며, 안쪽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 목욕시설에는 옷을 보관하는 사물함(잠금장치 설치 포함)이 있는 탈의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 입고 있던 일상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에는 탈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탈의시설 앞에는 신발을 닦기 위한 적절한 장치(예: 철망, 발매트, 신발청소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 노동자가 작업 중 악취가 심한 물질이나 강력한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 작업복·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 특히,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보호복을 집, 숙소 등 개인 주거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 쓰레기통, 거울을 비치하고, 작업 중 젖게 되는 작업복 및 보호복을 건조할 수 있는 전기 건조기 등의 비치를 권장합니다.
- 창문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소독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관련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용,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세탁시설

- 작업복을 세탁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경우 세탁과 세탁물 건조 공간을 확보하고, 빨래건조대를 사용인원수에 맞게 구비하도록 권장합니다.
- 물빠짐이 잘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하도록 하며, 세제 등이 부족하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급적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 창문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보호복의 경우 집이나 개인 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세탁하거나,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 세탁합니다.
  - 단,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를 알리고,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전달합니다.

5. 화장실

- 작업장에서 300m 이내의 이동거리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화장실을 적절하게 분산 설치합니다.

- 화장실 내에 세면대가 없다면, 가까운 곳에 세면대가 있어야 합니다.

- 작업장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거나, 지하에 있거나,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작업장인 경우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장 외부에 같은 수준의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300m 이내에 있다면, 간이화장실을 현장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운영자와 사전 협의 필요**

- 화장실에는 휴지 등 위생용품을 제공합니다.

- 실내조명은 KS 조도기준(KSA 3011)을 준용하여 60~150Lux로 합니다.

- 가급적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연 환기(창문 환기)의 경우 양방향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기는 매일 사용되는 경우 하루 1번은 청소해야 하고, 화장실과 그 부대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합니다.

- 정기적이고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해 화장실에 청소 점검표를 마련하여 청소 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상태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간선 또는 지선 버스의 경우, 운수회사 별로 회차지점에서 이동 거리가 100m 이내에 화장실을 확보합니다. 주간에만 운영되는 개방형 화장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장거리 노선(3시간 이상)은 회차지점 외에 중간 운행경로 상에도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확보*해야 하고, 중·단거리 노선(3시간 미만)에도 화장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노선별 화장실 유형 : 개방형화장실, 주유소화장실,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 상가 화장실 등 기타 (※ 출처 : 서울시 시내버스운전사 용변권 확보 방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관련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용,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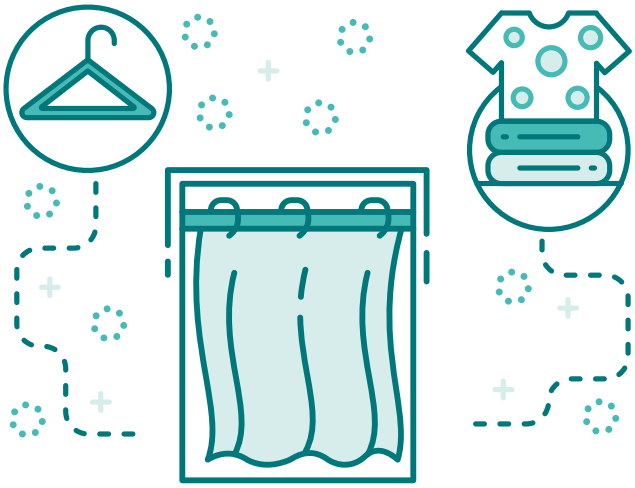

V 주요 체크리스트

일반사업장

구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공통사항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표시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 · 설치		
	안전시설 (소화기,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 사용, 바닥 하수구에는 악취 차단 장치 설치		
	가급적 적정 온도 (여름 20~28℃, 겨울 18~22℃) 유지 · 관리		
세면·목욕시설	여러 대의 세면대·샤워기를 동시에 사용 시 여유공간과 통로의 중복 여부		
	작업장과 목욕시설 사이의 이동거리는 300m 이내 유지		
	비누·샴푸 등 구비하고, 비누선반·수건걸이 등을 비치		
	실내조명은 150~300 Lux, 습기 배출을 위한 자연환기 또는 환기장치 설치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사용빈도에 따라 청소 실시		
탈의시설	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설치		
	출입문 앞에 신발을 털거나 닦는 시설 설치(예: 철망, 발 매트, 신발 청소기)		
	다수노동자 동시 이용시 1인당 0.5m^2 이상 확보 및 이동통로 고려		
	목욕시설과 같은 공간 내에 설치, 작업장과의 이동거리는 가급적 300m 이내 유지		
	쓰레기통과 거울비치, 잠금기능이 있는 사물함 설치		
세탁시설	세탁물 건조공간 확보, 인원수에 맞게 빨래건조대 구비, 주기적 청소 및 청결 관리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 상태 주기적 점검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작업복·보호복을 숙소 등 개인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내 세탁 또는 전문 세탁업체 위탁		
화장실	작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적절히 분산 설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 설치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 등 제외)		
	변기와 세면대 앞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이동통행 공간 확보		
	기칸 안에 옷걸이용 고리, 화장지 걸이, 화장지, 세면대에 비누, 건조설비 설치		
	실내조명은 60~150Lux 이상 확보, 환기 및 난방시설 설치, 필요시 온수 공급		
	변기는 매일 사용시 매일 청소, 그 외 시설은 사용빈도에 따른 청소 및 소독		
	정기적 청결상태 유지, 청소 점검표 마련, 담당인력의 지속적 관리상태 표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

구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공통사항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표시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 · 설치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 사용		
	화장실과 목욕시설 외부에 개인보호장비(예: 안전모, 안전대) 보관 장소 확보		
	가능한 적정 실내온도(여름 20~28℃, 겨울 18~22℃) 유지·관리		
	필수 용품이외 다른 물건(특히 위험물질)보관 금지		
	안전시설 (소화기,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세면·목욕시설	여러대의 세면대·샤워기를 동시에 사용 시 여유공간과 통로의 중복 여부		
	실내조명은 150~300 Lux, 습기 배출을 위한 자연환기 또는 환기장치 설치		
	휴게실, 작업준비실 인근에 설치 (야외시설은 이동시 외부시설,날씨변화로부터 보호)		
	비누, 샴푸 등을 구비하고, 비누선반, 수건걸이 등 비치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사용빈도에 따라 청소 실시		
탈의시설	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설치		
	출입문 앞에 신발을 털거나 닦는 시설 설치 (예: 철망, 발 매트, 신발 청소기 등)		
	목욕시설과 같은 공간 내에 설치, 작업장과의 이동거리는 가급적 300m 이내 유지		
	쓰레기통과 거울비치, 잠금기능이 있는 사물함 설치		
세탁시설	세탁물 건조공간 확보, 인원수에 맞게 빨래건조대 구비, 주기적 청소 및 청결 관리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 상태 주기적 점검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작업복·보호복을 숙소 등 개인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내 세탁 또는 전문 세탁업체 위탁		
화장실	작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적절히 분산 설치		
	이동거리는 300m 이내 유지		
	간선 또는 지선 버스는 회차 지점에서 100m이내 마련, 야간에도 이용 조치 - 장거리 노선(3시간 이상)은 회차지점 외에 중간 운행경로 상에도 확보 - 중·단거리 노선(3시간 미만)에도 확보 필요		
	세면대가 내부에 없다면 가까운 곳에 세면대 비치, 휴지 등 위생용품 제공		
	실내조명은 60~150Lux 이상 확보, 가급적 환기장치 설치		
	변기는 매일 사용시 매일 청소, 그 외 시설은 사용빈도에 따른 청소 및 소독		
	정기적 청결상태 유지, 청소 점검표 마련, 담당인력의 지속적 관리상태 표시		

제3장

세척시설과 화장실 관련 규정

Ⅰ. 세척시설 관련 법령

Ⅱ. 화장실 관련 법령

[참고자료]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D-44-2016)

I 세척시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조 항	내 용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제24조 (보건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ㅇ 위반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ㅇ 위반시 처벌 : : 제2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제30조의6)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건조시설 등 세척시설이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정하지 아니함

관련조항	작업명	설치·비치품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 (세척시설 등)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함.
제448조 (세척시설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함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즉시 물로 씻어 낼 수 있는 세면, 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함
제464조 (목욕설비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사업장[1]	탈의실·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衣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함
제465조 (긴급세척시설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2]	긴급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제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 설치[3]
제508조 (세안설비 등)	금지유해물질 취급 실험 등[2]	응급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갖추어야 함
규칙 제570조 (세척시설 등)	온도·습도에 의해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1]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 건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규칙 제589조 (세척시설 등)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함.

규칙 제599조 (세척시설 등)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규칙 제615조 (세척시설 등)	분진작업 (동 규칙 별표 16에서 정한 분진작업, 단,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 제외)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1) 세면시설없이 목욕시설 설치의무만 있는 업무는 전신세척(목욕)을 해야하므로 세면시설을 설치하여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세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3)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발행 : 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23쪽~29쪽] 참조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목	내 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ㅇ위반시 처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 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시행규칙 제4조 관련)

항 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탈의실	ㅇ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KOSHA GUIDE
D - 44 - 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2016.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로부터 신체 접촉 시 신속히 씻어내기 위한 긴급샤워기, 세안 및 세면설비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안설비 등"이라 함은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 등을 말한다.

(나) "긴급샤워기(Emergency shower)"라 함은 긴급 시 몸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설치된 샤워꼭지와 샤워꼭지에 세척용수를 공급하는 조작밸브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다) "세안설비(Eye shower)"라 함은 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설치장소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액체·증기 또는 가스 및 분말 상태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에 적용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2) 화학실험실

(3)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4. 긴급샤워기(<그림 1> 참조)

4.1 샤워꼭지의 성능 등

(1) 샤워꼭지는 긴급샤워기가 설치되는 바닥에서 210cm(82in) 이상 240cm (96 in) 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용수 공급관을 겸한 기둥을 설치한다.

(2) 세척용수의 분사 범위는 바닥으로부터 150cm(60in)의 높이에서 지름이 50cm(20 in) 이상이어야 한다.

(3) 샤워기의 중심에서 반지름 45cm(16in) 이내에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세안설비나 세면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세안설비나 세면설비는 방해물로 보지 아니한다.

(4)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5) 샤워꼭지는 세척용수를 전면에 골고루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2 조작밸브 등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열려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170cm(69in) 이하의 높이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수동 또는 자동 밸브 작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칸막이

칸막이를 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지름은 90cm(34in) 이상이어야 한다.

4.4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1) 샤워기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 25mm 이상의 세척용수 배관에 샤워기를 연결한다. 샤워꼭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210cm(82in)가 되도록 하고 세척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 조작밸브나 펌프를 준비한다.

(3) 긴급샤워기의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분당 80리터의 세척용수가 공급되도록 유량조작밸브를 조절하고 세척용수가 전면에 골고루 분사되는지를 확인한다. 바닥으로부터 150cm(60in)의 높이에서 직경 50cm(20in) 이상으로 분사되는지를 확인한다.

4.5 설치

(1)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

(5)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7)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가)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와 조작밸브가 잠겨 있는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

(라)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5. 세안설비 (<그림 2> 참조)

5.1 세안설비의 성능 등

(1) 세안설비는 일시에 세척용수를 양 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안설비는 사용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설계 및 배치한다.

(3) 세안설비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4) 세안설비의 세척용수량은 최소 분당 1.5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낮게 한다.

(5) 세안설비의 주위에는 사용자가 눈을 세척하면서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6) 적절한 세안형태는 <그림 3>과 같이 세척용수 물줄기의 최정점에서 4.0cm(1.5in) 아래의 높이 사이에 길이가 10cm 이상의 시험게이지를 위치시킬 경우 물줄기의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로 안쪽의 선은 3cm(1.25in) 이하, 바깥쪽의 선은 8.5cm(3.25in) 이상이어야 한다.

5.2 조작밸브 등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5.3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1) 세안설비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분당 1.5리터 이상의 세척용수가 공급되고 두 개의 물줄기가 거의 같은 높이까지 도달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는 정도의 압력인 지를 확인한다.

5.4 설치

(1)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 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cm(35in)내지 115cm(45in)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cm(6in)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21MPa(30psi) 이상으로 유지한다.

(5)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6)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안설비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7) 세척용수의 온도는 따듯한 정도가 좋다. 다만,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5. <부록> 설치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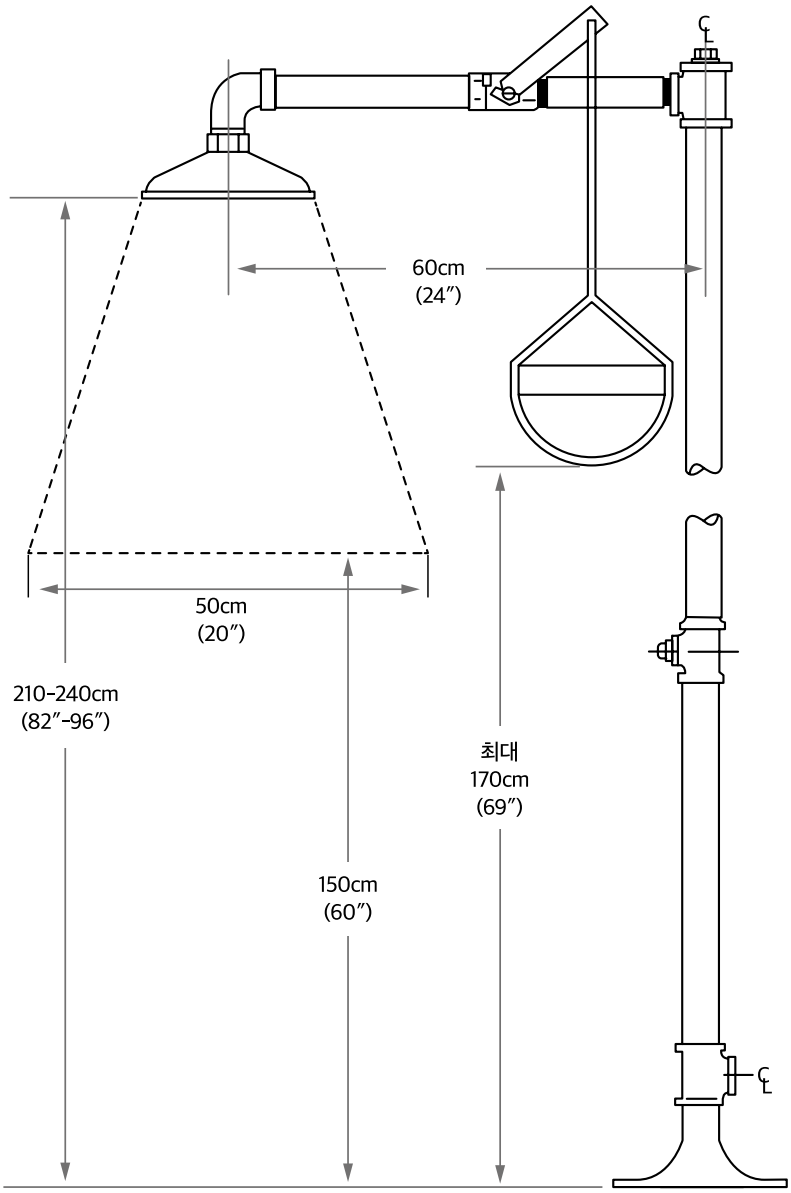

<그림 1> 긴급샤워기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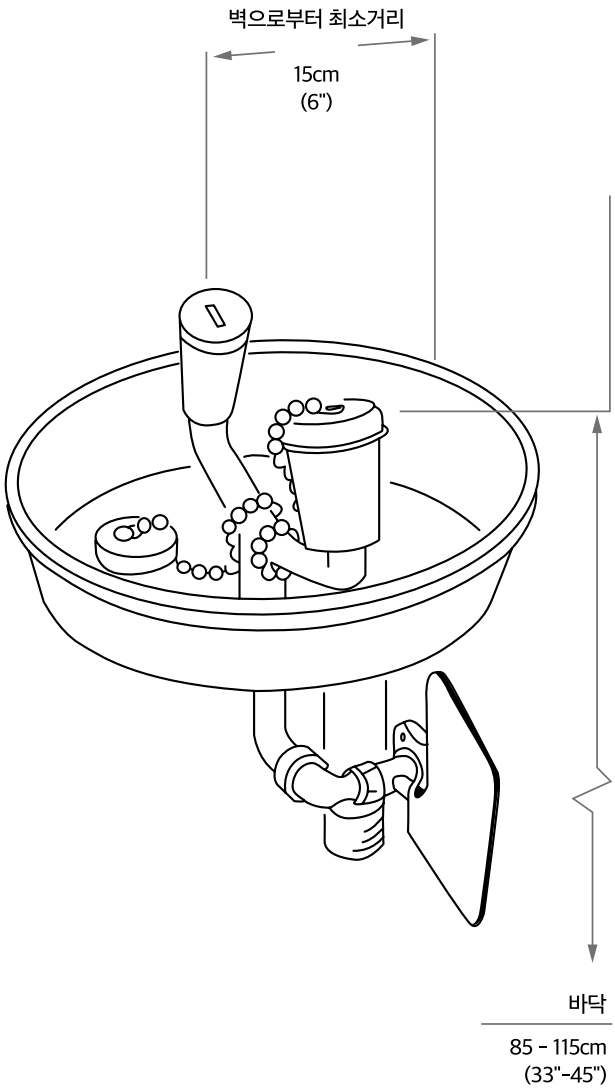

<그림 2> 세안설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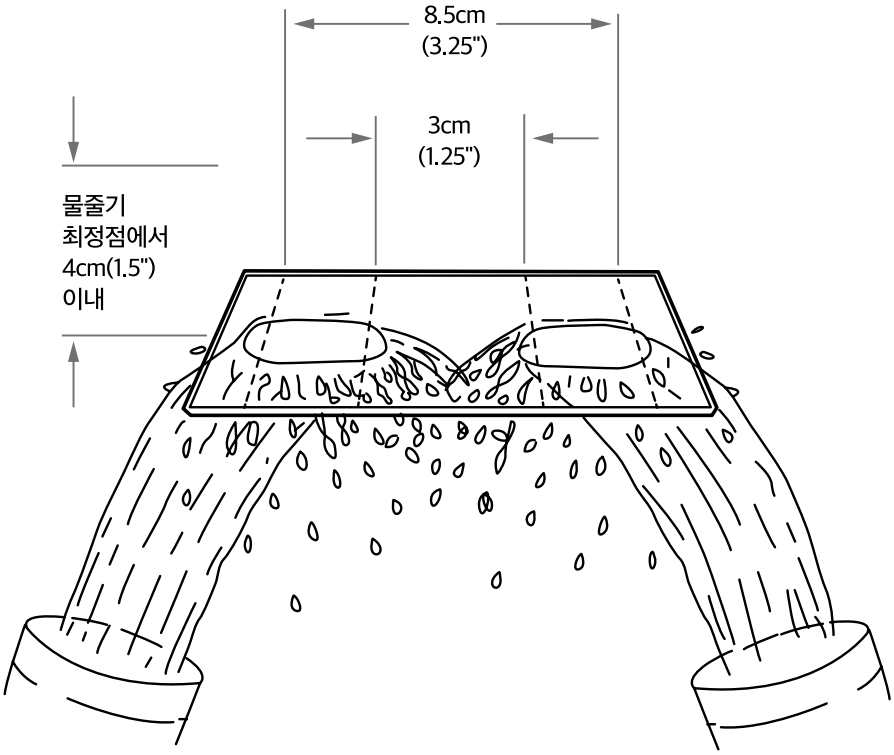

<그림 3> 세안설비 시험게이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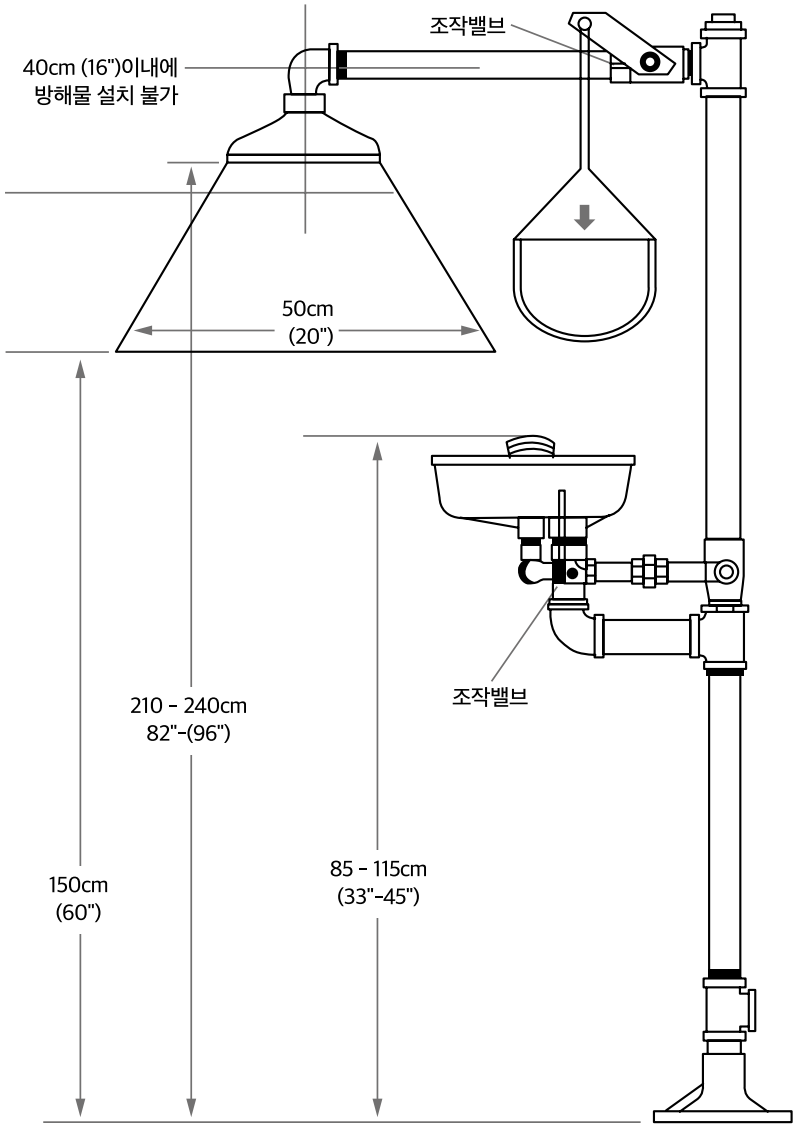

<그림 4> 긴급샤워기와 세안설비 결합 설치 예

II 화장실 관련 법령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 법상 화장실 설치기준이 지켜지도록 건축허가 할 때에 지도**
- 법인 또는 개인 소유 화장실은 같은 법 시행령(법 제3조 17호 관련)에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에 해당됨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 ·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2. 특별자치도, 시 ·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관광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 · 제6호 · 제7호 · 제10호) 3.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4. 대규모점포 · 임시시장 · 상점가 · 전문상가단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5.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6. 휴게시설(「도로법」 제2조 제2호가목) 7. 철도시설 중 역시설(「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 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가목) 9.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항만의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 제1호) 10. 유선장 및 도선장(「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 11.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6호)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 1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4.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 15. 공연장(「공연법」 제2조 제4호)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다.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라.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마.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바.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장례시설: 장례식장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의 규모 이상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 (공중 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생략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4. 대 ·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 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 · 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 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중 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방 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유료 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 ·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 · 운영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시설 점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구 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개선 명령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제7조 ·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 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 · 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 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과태료)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 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 5. 30.]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구 분	제 목	내 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반시 처벌: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시행규칙 제4조 관련)

항 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장

외국 및 타법의 세척시설 · 화장실 관련 규정

Ⅰ. 독일의 규정
Ⅱ. 영국의 규정
Ⅲ. 호주의 규정
Ⅳ.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Ⅴ. 공중화장실 미개방시 제재조치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시

I 독일의 규정

■ 독일에서는 작업장의 위생시설 및 세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 위생에 대한 기술규정(Technische Regeln für Arbeitsstätten – Sanitärräume - ASR A4.1, 201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화장실, 목욕시설, 탈의시설)	- 필수적인 시설 외 일체의 물건이나 재료(특히 위험 물질)를 보관할 수 없다. - 천정 높이는 2.5m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작업장이 자치구의 건축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본격 리모델링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기준보다 약간 낮은 천정도 인정된다. - 가림벽, 문, 창문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 거울에 조명이 설치될 경우 준수해야 할 수직 광량의 최소값은 500lx이다. - 남녀 근로자가 따로 사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9명 이하인 회사는 사용 시간을 정해 분리 운영할 경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샤워실과 탈의실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근로자 수 5명 이하의 회사에서는 남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용할 경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하나로 묶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적절한 환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 해당시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설치물이나 시설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 바닥 하수구에는 악취 차단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트랩의 봉수부에 담긴 물은 반드시 새로운 물로 교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까운 곳에 배수 밸브(수도 꼭지)가 따로 있어야 한다. - 난방 장치는 근로자가 뜨거운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고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 특히 탈의실 앞 - 필요한 경우 (예: 오염이 심한 작업) 신발을 닦기 위한 적절한 장치(예: 철망, 발 매트, 신발 청소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 환기 장치는, 사용 중 강한 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화장실</td><td>

- 화장실의 환기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환기(창문 환기)의 경우 아래표에 따른 최소 환기 면적을 준수한다.

<table>
<tr><th rowspan="2">시스템</th><th colspan="2">위생 시설당 열린 환기창의 면적*</th></tr>
<tr><th>[m²변기]</th><th>[m²소변기]</th></tr>
<tr><td>단방향 환기</td><td>0.17</td><td>0.10</td></tr>
<tr><td>양방향 환기**</td><td>0.10</td><td>0.06</td></tr>
<tr><td colspan="3">* 위 면적은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면적의 합계이다.
** 마주보는 두벽에 각 하나씩, 또는 하나의 벽 천정에 환기구가 있는 경우</td></tr>
</table>

- 바닥과 벽은 청소하기 쉬워야 하며, 화장실과 그 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한다. 매일 사용되는 경우 최소 하루 1번은 청소해야 한다.

- 정기적이고 청결한 청소 유지를 위해 화장실에 청소 계획표를 마련하여 담당 청소 인력이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유한다.

- 화장실은 작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50m이하가 적절하며 10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화장실은 작업장과 같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서 1층 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되며, 건물 내 작업장에서 화장실로 갈 때 야외를 통해서는 안 된다.

- 화장실 변기칸이 1개 이상이거나, 작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 응급실과 화장실이 직접 통할 경우, 전실을 갖추어야 한다. 전실에는 소변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작업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동시 사용률이 낮은 기준으로 제시된 표 1의 변기의 최소 개수를 준수한다.

※ 동시 사용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낮은 동시 사용률이란 근로자가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경우이다 (예: 사무실). 높은 동시 사용률이란 휴식 시간에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경우이다 (예: 컨베이어 벨트 작업, 강의를 하는 교사). 낮은 사용률과 높은 사용률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재량에 맞게 적용한다. (그림 1 참조)

</td></tr>
</table>

구 분	내 용
화장실	■ **그림 1: 표 1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그래프 읽는 법의 예: 월요일 오후에 90명의 남성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높은 동시 사용률), 9개의 변기(3개의 변기와 6개의 소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15명의 여성 근로자가 소속된 사무실(낮은 동시 사용률)에는 추가적으로 2개의 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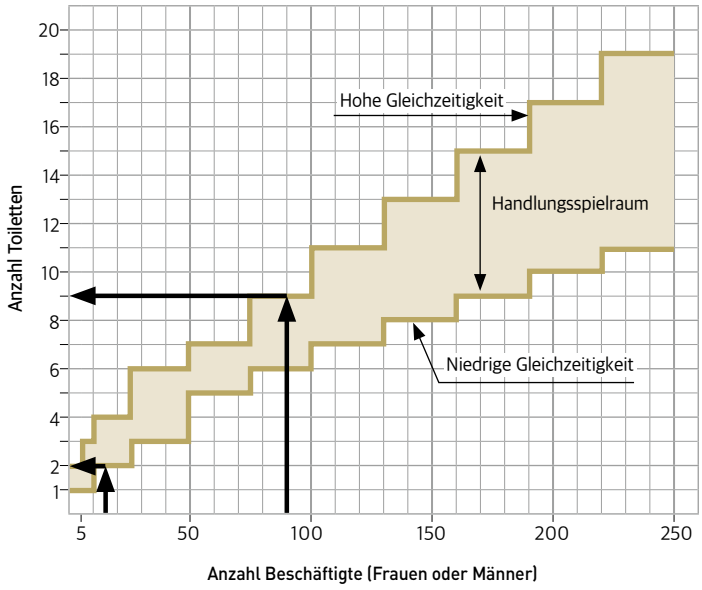 -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1/3이상은 좌식 변기를 나머지는 소변기를 설치한다. - 소변기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소변기 사이에 간이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 - 화장실 하나에 변기칸과 소변기가 각 10개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내 용
화장실	■ 표 1: 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최소 개수

여성 또는 남성근로자	동시 사용률이 낮은 경우 최소개수		동시 사용률이 높은 경우 최소 개수	
	변기/소변기	세면대	변기/소변기	세면대
~ 5	1*	1	2	1
6 ~ 10	1*	1	3	1
11 ~ 25	2	1	4	2
26 ~ 50	3	1	6	2
51 ~ 75	5	2	7	3
76 ~ 100	6	2	9	3
101 ~ 130	7	3	11	4
131 ~ 160	8	3	13	4
161 ~ 190	9	3	15	5
191 ~ 220	10	4	17	6
221 ~ 250	11	4	19	7
	근로자 30명 증가 때마다 +1	근로자 90명 증가 때마다 +1	근로자 30명 증가 때마다 +2	근로자 90명 증가 때마다 +2
* 남성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1개 추가 권장				

- 변기와 소변기 앞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변기 및 소변기 앞의 움직임 공간은 양쪽 대칭형으로 비어 있어야 한다.
- 변기 칸의 벽과 문높이는 1.90m 이상이되 천장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벽, 문과 바닥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0.10 ~ 0.15m로 한다.
- 변기가 1개뿐인 화장실 변기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한며, 변기칸 안에는 옷걸이용 고리, 화장지 걸이, 변기 솔이 있어야 한다.
- 여성이 사용하는 모든 변기 옆에는 뚜껑이 있는 위생 쓰레기통이 있어야 한다.
- 남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뚜껑이 있는 위생 쓰레기통이 적어도 1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화장지는 언제나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수도와 폐쇄형 하수구가 있는 세면대)과 쓰레기통이 있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고(예: 공급장치가 있는 물비누) 건조할 수 있는 도구(예: 일회용 타올, 면수건 공급기, 온풍 건조기)가 있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옷걸이용 고리도 있어야 한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욕시설</td><td>

- 중간·강한 오염성 활동, 건강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강한 냄새를 동반하는 물질을 다루는 활동, 전신용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활동, 강력한 냉난방 상황(더위, 추위)에서의 활동, 물기가 있는 활동, 고된 육체 노동 활동이 아닌 경우에 목욕실이 없다면, 작업장과 탈의실 가까운 곳에 수도와 폐쇄형 하수구를 갖춘 세면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사용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목욕실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환기(창문 환기)의 경우 표 1에 따른 최소 환기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 1 : 목욕실 자연 환기창의 최소 면적

<table>
<tr><th>시스템</th><th>환기구의 열린 면적[m^2/m^2 바닥 면적]*</th></tr>
<tr><td>단방향 환기</td><td>0.04</td></tr>
<tr><td>양방향 환기**</td><td>0.024</td></tr>
<tr><td colspan="2">* 위 면적은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면적의 합계이다.
** 마주보는 두 벽에 각 하나씩, 또는 하나의 벽과 천정에 환기구가 있는 경우</td></tr>
</table>

- 습기를 효율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환기 장치 설치를 권하며, 특히 샤워기가 있는 목욕실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

- 목욕실과 탈의실은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목욕실과 탈의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연결하는 통로는 야외를 거쳐서도 안 되고 작업장을 거쳐서도 안 된다.

- 목욕실과 탈의실은 같은 층에 있어야 하며 1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연결 통로의 온도는 최소 탈의실 온도만큼 높아야 한다

- 샤워기가 여러개인 목욕실의 경우 파티션이 있으며, 샤워실을 반개방 또는 완전 개방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며,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목욕실과 그 시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매일 사용되는 곳이라면 매일 청소해야 한다.

</td></tr>
</table>

구 분	내 용
목욕시설	*** 목욕실의 바닥 중 젖은 부분과 맨발로 딛어야 하는 부분은 무좀 및 물사마귀 예방을 위해 소독제로 청소, 허가 받고 검증된 소독약 또는 소독용 세제만을 사용, 정기적이고 철저한 청소 유지를 위해 목욕실에 청소 계획표를 게시하고 담당 청소 인력이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유** - 목욕실은 작업장과 가까워야 한다. 건물 안의 작업장과 목욕실 사이의 거리는 300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그 통로는 야외를 통과하지 말아야 한다. 목욕실은 다른 층에 있어도 된다. - 목욕실에는 충분한 개수의 세면대 및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별첨1 참고) - 규정에 따른 세면대와 샤워기를 기존 작업장에 추가 설치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동일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동시 사용률 낮추기 등이 있다. 이러한 보완 조치는 기존 화장실에 대한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허용된다. - 목욕시설은 그림 1의 최소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림 1 : 목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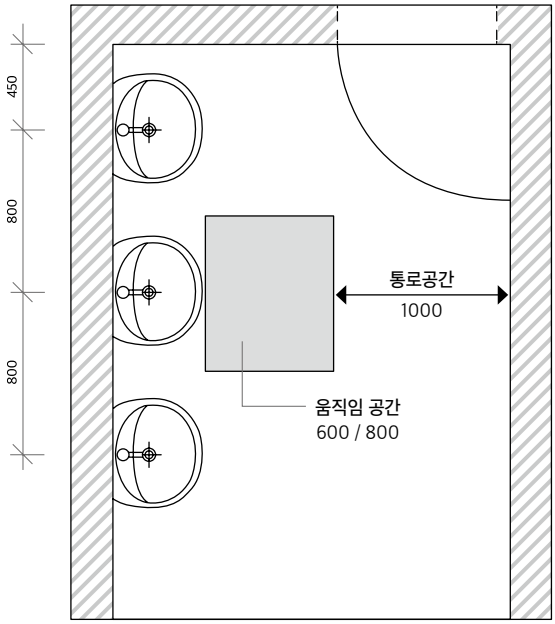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목욕시설	- 움직임 공간과 통로공간이 고려되어야 하고, 세면대와 샤워기 앞에는 움직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목욕시설을 여러 근로자가 사용할 때 움직임 공간이 겹쳐서는 안 된다. 여러 개의 세면대와 샤워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목욕시설의 경우, 통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로 공간과 움직임 공간이 겹쳐서는 안 된다. - 규정에 따른 움직임 공간을 기존 작업장에 추가 설치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동일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예로는 동시 사용률 낮추기 등이 있다. 이러한 보완 조치는 기존 목욕실에 대한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허용된다. 이 때 세면대 당 움직임 면적은 350mm x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샤워기의 최소 면적은 $1m^2$ 이며, 한 쪽 면의 길이가 900mm 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 세면대와 샤워기에는 음용수 수준의 냉온수, 비누선반, 수건걸이가 있어야 한다. - 샤워기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 혼합되어 공급되는 물의 온도는 사용 시간 동안 +43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하수는 가장 짧은 경로를 통해 빨리 배수되어야 하며, 다른 세면대나 샤워기를 거쳐 흘러서는 안 된다. - 필요한 경우 수건 말리는 장치와 머리 말리는 장치를 설치한다. - 일회용 타올, 면수건 공급기, 온풍 건조기 등과 같은 손 건조 장치가 세면대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 목욕실에는 쓰레기통과 옷걸이용 고리가 있어야 한다. 탈의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샤워실의 경우 건조한 구역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 피부를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손을 씻고, 필수적인 경우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탈의시설	- 탈의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효율적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환기(창문 환기)의 경우 표 1에 따른 최소 환기 면적을 준수한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탈의시설</td><td>

■ 표 1 : 탈의실의 자연 환기를 위한 최소 면적

<table>
<tr><th>시스템</th><th>환기구의 면적 [m^2/ m^2]*</th></tr>
<tr><td>단방향 환기</td><td>0.02</td></tr>
<tr><td>양방향 환기**</td><td>0.012</td></tr>
<tr><td colspan="2">* 위 면적은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면적의 합계이다.
** 마주보는 두 벽에 각 하나씩, 또는 하나의 벽과 천정에 환기구가 있는 경우</td></tr>
</table>

- 탈의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한다.

- 정기적이고 철저한 청소 유지를 위해 목욕실에 청소 계획표를 게시하고 담당 청소 인력이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유한다.

- 특수 복장이 필요한 경우 탈의실이 있어야 하며, 노동자는 다른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어서는 안 된다.

- 탈의실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어야 하며, 다른 근로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쪽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 고온작업 근로자를 위한 탈의실은 안전 장치(예: 난방 된 통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작업장 가까이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동 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의실과 고온작업장 사이의 거리는 100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층 이상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된다.

-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탈의실을 사용할 경우 1인당 움직임면적이 0.5m^2는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동 통로도 고려해야 한다.

- 탈의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근로자 4명 당 1개의 의자가 있어야 한다.

- 모든 근로자에게 옷 보관을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크기가 충분하고 통풍이 잘 되며 잠글 수 있고 선반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사물함의 경우 최소 0.30m x 0.50m x 1.80m (가로 x 세로 x 높이)의 규격을 가져야 한다. 개인 의복과 작업복 및 보호복을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물함을 2개 제공하거나, 칸막이가 있고 폭이 2배인 사물함을 설치해야 한다.

</td></tr>
</table>

구 분	내 용
탈의시설	- 근로자가 작업 중 악취가 심한 물질이나 강력한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 작업복 및 보호복을 위한 공간과 일상복을 위한 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 -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탈의실의 경우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는게 좋다.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탈의실의 경우, 입구와 출구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작업 중 젖게 되는 작업복 및 보호복은 다음 사용 시까지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탈의실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 충분히 통풍이 되는 건조실 또는 전기 건조기) - 탈의실에는 쓰레기통, 거울, 옷장이 있어야 한다.

■ 작업장 위생에 대한 기술규정(ASR)은 건설현장에 대한 예외/보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화장실, 목욕시설, 탈의시설)	- 건설 현장 차량, 건설현장용 조립식 차량, 컨테이너 또는 기타 간이공간의 내부에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리모델링 전까지는 기존 위생시설의 높이가 2.30m 보다 조금 낮아도 되며, 만약 제3자가 충분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매일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화장실 공간 전체를 1주일에 적어도 2번 청소한다. 화장실 안의 변기와 이동형 단독변기칸 안의 변기는 매일 사용 시 매일 청소한다. - 건설현장에서는 21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을 남녀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사용 시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남녀 근로자가 각 6명 이상 있는 경우, 남녀별 위생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
화장실	- 한 명의 사업주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2주 이상 연속으로 고용할 경우,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과 달리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건설현장에서는 이동형 단독변기칸을 설치해도 되며, 세면대가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다.

구 분	내 용
화장실	- 이동형 단독변기칸에 세면대가 없다면, 변기칸 가까운 곳에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 이동형 단독변기칸은 10. 15일~ 4. 30일까지 난방 할 수 있어야 한다. - 규정과 달리 화장실 또는 이동형 단독변기칸에서 작업장까지의 이동 거리는 100m 보다 가까워야 한다. 건설현장의 구조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 고층 건물의 파사드 작업, 터널 안의 건설현장, 운하건설작업, 도로 건설현장) 화장실까지의 이동 시간이 5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도보 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 - 작업장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거나, 작업장이 지면/지하에 있거나, 화장실을 세울 수 있는 곳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면 이동형 단독변기칸을 설치해야 한다. - 건설현장 외부에 같은 수준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가능하며 이동형 단독변기칸에서 작업장까지의 이동 거리는 100m 보다 가깝다면, 이동형 단독변기칸을 건설현장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건설현장은 사방이 막힌 전실을 설치하는 대신 가림막을 사용할 수 있다. - 변기칸 바깥에는 개인 보호 장비 (예: 전천후의류 또는 안전벨트)를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목욕시설	- 한 명의 사업주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2주 이상 연속고용할 경우, 목욕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매일 근로자들이 위생실이 있는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건설현장의 목욕실은 휴게실 및 작업준비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규정과 달리 목욕실에서 탈의실 및 휴게실로 가는 통로는 근로자를 외부 시선과 날씨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야외에 있어도 된다. - 규정과 달리 건설현장에 있는 샤워기 및 세면대 앞의 움직임공간은 0.50 m^2 로 충분하다. - 규정과 달리 샤워기의 최소 넓이는 800 x 800 mm 로 충분하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욕시설</td><td>- 목욕실 바깥에는 개인 보호 장비 (예: 전천후의류 또는 안전벨트)를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td></tr>
<tr><td>건설현장 변기/ 소변기, 세면대, 샤워기의 최소 개수</td><td>- 규정과 달리 건설현장에서는 아래 표를 적용한다.
<table>
<tr><th rowspan="2">위생시설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대 수</th><th colspan="3">최소 개수</th></tr>
<tr><th>세면대</th><th>샤워기</th><th>변기/소변기</th></tr>
<tr><td>~ 5</td><td>1</td><td>0</td><td>1*</td></tr>
<tr><td>6 ~ 10</td><td>2</td><td>0</td><td>1*</td></tr>
<tr><td>11 ~ 20</td><td>3</td><td>1</td><td>2</td></tr>
<tr><td>21 ~ 30</td><td>5</td><td>1</td><td>3</td></tr>
<tr><td>31 ~ 40</td><td>7</td><td>2</td><td>4</td></tr>
<tr><td>41 ~ 50</td><td>9</td><td>2</td><td>5</td></tr>
<tr><td>51 ~ 75</td><td>12</td><td>3</td><td>6</td></tr>
<tr><td>76 ~ 100</td><td>14</td><td>4</td><td>7</td></tr>
<tr><td>30명 추가될 때마다</td><td>+3</td><td>+1</td><td>+1</td></tr>
<tr><td colspan="4">* 남성 근로자를 위해 소변기 1개 추가를 권장함</td></tr>
</table></td></tr>
<tr><td>탈의시설</td><td>- 휴게시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작업복과 개인 의복을 분리하여 적절한 옷장에 보관할 수 있다면, 건설현장에 따로 탈의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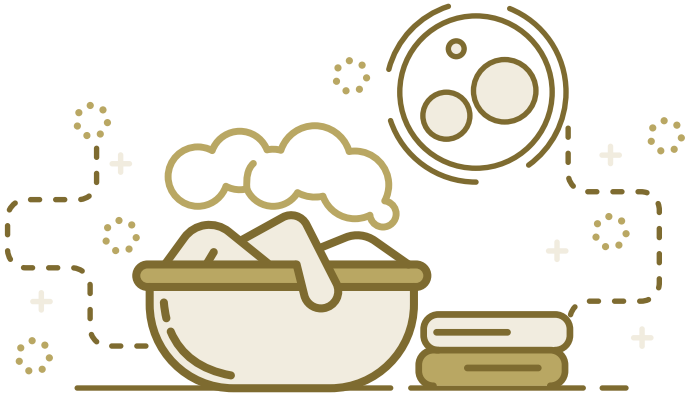

별첨1

독일 목욕시설 세면대/샤워기 개수

■ A형의 경우 세면대의 최소 개수(중간 오염성 활동)

목욕실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대 인원수	동시 사용률에 따른 세면대의 최소 개수	
	낮음	높음
~ 5	1	2
6 ~ 10	2	3
11 ~ 15	3	4
16 ~ 20	3	5
21 ~ 25	4	6
26 ~ 30	4	6
31 ~ 35	5	7
36 ~ 40	5	8
41 ~ 45	6	9
46 ~ 50	6	10
51 ~ 55	7	11
56 ~ 60	8	12
61 ~ 65	8	12
66 ~ 70	8	12
71 ~ 75	9	13
76 ~ 80	10	14
81 ~ 85	10	14
86 ~ 90	10	14
91 ~ 95	10	14
96 ~ 100	11	15
30명 추가될 때마다	+2	+3

■ B형의 경우 세면대의 최소 개수(강한 오염성 활동)

목욕실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대 인원수	동시 사용율에 따른 세면대의 최소 개수		동시 사용율에 따른 샤워기의 최소 개수	
	낮음	높음	낮음	높음
~ 5	1	2	1	1
6 ~ 10	1	2	1	2
11 ~ 15	2	3	1	2
16 ~ 20	2	4	2	3
21 ~ 25	3	5	2	3
26 ~ 30	3	5	2	3
31 ~ 35	3	6	2	3
36 ~ 40	4	7	2	4
41 ~ 45	4	8	2	4
46 ~ 50	4	9	2	4
51 ~ 55	4	9	3	5
56 ~ 60	5	11	3	5
61 ~ 65	5	11	3	5
66 ~ 70	5	11	3	5
71 ~ 75	5	12	3	5
76 ~ 80	6	12	4	6
81 ~ 85	6	12	4	6
86 ~ 90	6	13	4	6
91 ~ 95	6	13	4	7
96 ~ 100	6	14	4	7
30명 추가될 때마다	+1	+3	+1	+2

■ C형의 경우 세면대의 최소 개수 (아주 강한 오염성 활동, 건강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강한 냄새를 동반하는 물질을 다루는 활동, 전신용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활동, 강력한 냉난방 상황(더위, 추위)에서의 활동, 물기가 있는 활동, 고된 육체 노동 활동)

목욕실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최대 인원수	동시 사용율에 따른 세면대의 최소 개수		동시 사용율에 따른 샤워기의 최소 개수	
	낮음	높음	낮음	높음
~ 5	1	2	1	2
6 ~ 10	2	3	1	3
11 ~ 15	3	4	2	4
16 ~ 20	3	5	2	5
21 ~ 25	4	6	3	6
26 ~ 30	4	7	3	7
31 ~ 35	5	9	4	9
36 ~ 40	5	10	4	10
41 ~ 45	5	12	4	12
46 ~ 50	6	13	5	13
51 ~ 55	6	14	5	14
56 ~ 60	6	15	5	15
61 ~ 65	7	16	6	16
66 ~ 70	7	16	6	16
71 ~ 75	8	17	7	17
76 ~ 80	8	18	7	18
81 ~ 85	9	18	8	18
86 ~ 90	10	19	9	19
91 ~ 95	11	20	10	20
96 ~ 100	11	20	10	20
30명 추가될 때마다	+2	+3	+2	+3

II 영국의 규정

■ 영국은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The 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에서 노동자들의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일반사업장, 중소기업, 건설현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사업장

구 분	고려내용
복지	적합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자들의 개인 의류와 작업의류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은 건조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탈의가 필요한 경우 탈의 공간을 따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작업장, 샤워장, 식당과 인접해 있어야 하며, 휴식을 취하는 작업자들이 개인 공간과 쉴 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중소기업

구 분	고려내용
위생· 복지시설	- 냉/온수, 비누와 타올 혹은 건조 기구가 구비된 청결한 변기와 세면대 - 휴식과 취식이 가능한 공간, 상하기 쉬운 음식 보관이 가능한 공간 - 오물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샤워시설 - 작업 시 옷이 젖게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 시설 - 의류 보관 시설 (작업복 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탈의 시설 필요) - 임산부나 육아를 위한 공간 -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 세정제, 손톱 관리 용품, 보호 크림과 피부 관리 제품 - 작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를 위한 화장실

※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Workplace Health, Safety & Welfare Regulations 1992)은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s) 하위 규정으로 건설현장, 선박 내 작업, 광산 작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사업장의 환기, 온도, 조명, 청결, 옥내 크기, 작업대 및 의자, 바닥 상태, 추락 또는 낙하물, 투명 및 반투명 문, 출입구와 벽, 창문, 채광 및 환기장치, 교통경로, 에스컬레이터, 위생시설 및 세탁시설에 대한 규제임. 그 자체로 벌칙조항은 없으나, 해당 내용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하급법원에서 £20,000 이하(상급법원은 벌금제한 없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건설현장

○ 영국의 건설업에서는 공사 설계 및 관리규정에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복지시설이 설치하기 전까지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분	고려내용
탈의실	작업자들이 특수 복장을 갖춰야 하는 현장에서는 남녀 구분 탈의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탈의실에서는 벤치와 의류 건조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오염된 보호 장비를 보관할 사물함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물함	작업자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잠금 기능 포함)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물함은 작업장 사무실이나 소규모 현장의 경우엔 차량에도 구비할 수 있다.
휴식과 취사	휴게실과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 작업자의 인원수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탁자와 등받이 의자 - 취사시설 (음식 준비, 물 끓이는 설비) - 여름엔 통풍 장치, 겨울엔 난방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전기로 운용되는 설비는 일산화탄소를 발생하는 LPG 난방 설비보다 전기로 운용되는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휴게실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건설 장비, 재료 보관은 불가능합니다.
음용수	음용수는 찾기 쉽고 손쉽게 닿는 위치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병에 든 생수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필요할 시 컵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복지	휴게 시설은 바람과 비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휴게 시설은 충분한 양의 탁자와 등받이 의자, 음수를 위해 물을 가열하고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시설 (가스나 전기 가스레인지 또는 전자레인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휴게실은 식물이나 장비 또는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건설 설계 및 관리 규정[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은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s) 하위 규정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음. 해당 규정에 건설업의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부로 휴게시설에 대한 기준을 면적, 가구수량,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위한 공간, 식사에 적합성, 끓는 물, 적정온도 유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 자체로 벌칙조항은 없으나, 해당 내용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하급법원에서 £20,000 이하(상급법원은 벌금제한 없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III 호주의 규정

■ 호주에서는 산업보건안전규정(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11) 과 작업환경 및 시설관리에 관한 시행규칙(Code of Practice, Managing the work environment and facilities)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규모, 위치, 특성에 따라 달리 휴게시설을 규정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은 이동을 많이 하는 직종인지, 상설인지 임시인지,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이 있는지, 야간근무를 하는지를 고려합니다.

구 분	내 용
복지시설	근로보건안전규정 제41절 : 사업자 혹은 사업주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장실, 식수, 세면 시설, 식당 등의 적합한 시설을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들은 반드시 정상적인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자 및 사업주는 쉽게 사용 가능한 적합한 시설을 제공,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업무의 특성 - 사업장 내 위해요소의 특성 - 사업장의 규모, 위치 및 특성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 및 구성
시설이용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반드시 복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장 인근에 시설*이 있어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적합하다면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제공됨. □ 사업장에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해 있음. □ 야간 근무조도 주간 근무조와 유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근로보건안전법 및 근로보건안전규정의 하위 규정인 근로 환경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은 근로환경 및 시설 관련 책임, 근로환경 및 시설 유지·관리, 출입, 청소, 복지시설, 시설이용, 식수, 화장실, 세면 시설, 이동·임시·벽지 근무, 식당, 개인용 보관함, 탈의실, 샤워 시설, 실외 작업, 숙소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법을 위반한 경우(개별조항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음) $50,000(개인), $500,000(법인)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Ⅳ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 분	제 목	내 용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과태료) 제7조의 2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해설

-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의 세부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시행규칙 제4조 관련)

항 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노동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V 공중화장실 미개방 시 제재조치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665 ; 2018.6.28.)

○ 질의

- 건축물 업무시설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은 공중화장실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건물주가 공중화장실 미개방 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회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장실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21조(과태료) 제2항 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허락없이 타기관에서 이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펴낸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사무관	**유봉현**
사무관	**이자형**
전문위원	**최선미**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장	**김일수**
산업보건부장	**홍순의**
산업보건부 차장	**유 민**

참여전문가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혜선**

사업장 세면 · 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 · 운영 가이드

2019-사업기획-406

발 행 일 : 2019년 6월
발 행 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주 소 : (우)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대표 전화번호 : 052-703-0500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